#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35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강선우·서미화·문금주

전진숙 • 문정복 • 이광희

황명선ㆍ허 영ㆍ박수현

박범계 • 박민규 • 박해철

의원(12인)

##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
- ⑦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정 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 3. 해당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 4.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제5항제1호에 따라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각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한약사단체,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 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보건의료인력 또는 인력수급 추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⑥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⑦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회) ① (생 략)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u>입학정원</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		
	할 때에는 제8조의2에 따른 보		
	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u>한다.</u>		
<u>&lt;신 설&gt;</u>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		
	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⑦</u> (생 략)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안		
	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		
	<u>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u>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 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 3. 해당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 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 4.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
- ③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 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 반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 ④ 각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장은 해당 수급추계위원회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한약사단체,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회,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 및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 3. 보건의료인력 또는 인력수급

   추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⑥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①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